

— 산업정책

- 임금체불 사업주 공공입찰 제한한다
- 내년 중소기업에 92조3천억 푼다
- 中企 납품단가에 특근수당 반영
-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 기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 시행
-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
-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 물품 적격심사기준 및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임금체불 사업주 공공입찰 제한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인터넷 등에 이름이 공개되고 공공입찰 제한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이름, 업체명, 체납 내용 등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하기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공개일 이전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직전 1년간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한 경우, 고용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다. 또 체불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대출받거나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불리해진다.

금융제재 대상자에는 명단공개 대상자 전원과 직

전 1년 동안 임금을 2회 체불한 사업주도 포함된다. 단,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전액 정산하면 명단공개와 금융제재 대상에서 빠진다. 고용부는 또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및 해당 사업주가 정부포상에서 배제되도록 '정부포상추천 제한제'를 도입하려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내년 중소기업에 92조3천억 푸다

내년에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92조3천억 원이 지원되고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지난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92조3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보다는 6조6천억원 적지만, 국제 금융위기 전인 2008년보다는 11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미래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에 올해보다 2조 2천억원 늘어난 24조2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제도도 1년 연장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

금에 역경때 방식의 보증부대출 중개시스템을 구축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중개시스템에 희망 대출종류와 금액 을 등록하면 은행들이 대출조건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가장 좋은 대출상품을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해외프로젝트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현물 출자도 추진된다.

녹색금융 지원대상은 현행 녹색설비 생산기업뿐 아니라 녹색설비 수요기업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또 녹색산업 성장지원을 위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반도체 제조업과 철도장비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13개 산업군에 대해 정책자금 공급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알선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금융회사가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업 측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단계에서 주채권은행과 기업의 협의절차를 마련하거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에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 납품단가에 특근수당 반영

제품생산을 위해 근로자들이 특근한 경우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수당을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현장에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이같은 대책마련은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한도가 넘는 납품을 요구할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휴일근무를 통해 직원에게 특근수당을 주면서 납품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의 주문량 증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특근수당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계약시 실적 인정 범위를 개선해 기술력이 뛰어난 신규업체가 기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되고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도 유도된다.

■ 산업정책

물류기업의 전자문서 처리방법도 다양화된다. 기업의 신고·신청 업무를 기업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고쳐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행 부진 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면서 “향후 민관협동현장실사단 등을 통해 기업 현장과 소통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1)

■ 기업의 투자 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를 위하여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으며

•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 받습니다.

기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4)

■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 1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 상속금액의 40%* 또는 2억 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공제한도 : 60억 원(다면, 15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80억 원,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100억 원)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 오던 가업상속공제를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더라도 연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 다만, 이 경우 해당 중견기업이 고용증대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고용요건 : 상속 후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년도 직전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 유지

〈기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졸업 이후 세부담 증가 완화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졸업이후 연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

▶ 시행 일 : 2011. 1. 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2-2150-4253)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차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 환급한도액은 연간 10만원이며, 휘발유 및 경유는 250원/l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약 161원/l)을 환급받게 됩니다.

-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등)를 발급받아 유류 구매 시 카드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 ▶ 추진배경 : 에너지 절약 및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에 대한 지원
- ▶ 주요내용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일몰을 2012년까지 2년 연장
- ▶ 시행 일 : 2011. 1. 1.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 시행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2-2613-3916)

■ 단일법인 기준 지방세법을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지방세법 분법 : (현행) 지방세법 → (개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종전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거듭하여 법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또한, 선진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 중심적이고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지방세3법 중 우선,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기한 후 신고 확대, 관허 사업제한 요건 강화, 세무조사기간 제한 등

- 둘째로,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 셋째,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선심성 지방세 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세 3법, 2011년 전면 시행〉

- ▶ 추진배경 : 후진적이고 복잡한 지방세법을 성격별로 분법, 전문화·선진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주요내용
 - ①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 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 ② (지방세기본법)수정신고제 개선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③ (지방세법)유사세원 종복과세 통폐합 및 영 세세목 정비 등 지방세목 체계의 간소화
 -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감면조례 등에 산발 규정된 감면규정 통합·재정비 등 감면관리체계의 효율화
- ▶ 시행일 : 2011.1.1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2-2100-3925)

- 2011.3.1.부터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

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1장당 1천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최근의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이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 징세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1천원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자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징세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 추진배경 :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의 전자적 방식 전환을 촉진 및 활성화
- ▶ 주요내용
 - ① (개 요) 전자적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1천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
 - ② (공제내용) 납세자가 자동계좌이체만을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의 범위 내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원에서 1천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 ▶ 시행일 : 2011.3.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042-481-5961)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지역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지식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자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이들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에게는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는 상담 및 출원관련 서류작성 지원 외에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제적 약자 계층에게 특허심판 및 소송대리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 ▶ 추진배경 : 단순 상담업무 뿐만 아니라 분쟁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
- ▶ 주요내용
 - ①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제적 약자에게 심판·소송대리 지원
 - ② 침해관련 민사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지원
- ▶ 시행일 : 2010.12.9
* 소송비용 지원 신청 등은 2011.1월부터 접수함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2-2110-6916)

■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그간 플라스틱 업계는 영세한 업계 현실과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의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 2011.1.1일부터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 ▶ 추진배경 :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체에 대하여 3년간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
 - ② 폐기물부담금 대상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기업은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

budamgum.or.kr)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 관련 증빙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본,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등

③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 시행일 : 2011.1.1(2013.12.31까지)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 02-2110-6680)

■ 대기업·제조업에 유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집니다.

• 기존의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통적인 내용을 적용하고, 오염물질 배출 관리 등 전통적 환경관리 영역에 초점을 두어 대기업·제조업 중심으로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12개 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11년 4월 개정되는 녹색기업 운영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종들도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추진배경 : 기존의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은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참여가 어려웠음

▶ 주요내용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가기준 차별화

② 전기·전자, 기계·자동차, 금융, 숙박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차별화된 평가기준 적용

※ 나머지 업종은 제조업/서비스업으로 나누어 공통기준 적용

▶ 시행일 : 2011.4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2-2110-6846)

■ 지금까지의 산업폐수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37종)·관리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여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현행 BOD 등 이화학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류수에서도 물벼룩 등이 죽는 경우가 있어 소하천 등의 생태적 손상이 우려됩니다.

■ 따라서,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 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을 도입하였습니다.

• '11. 1. 1일부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1~2종)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신규 유해화학물질에 개별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산업폐수의 독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도입

▶ 주요내용

①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에 적용(3~5종 : '12년부터 시행)

※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대상, '11년부터 단계적 적용

※ 35개 업종의 폐수가 유입되고 1일 하수 처리용량 500m³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

② 규모별·지역별 적용기준 및 시기

구 분	지 역	기준(이하)	적용시기
공공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	TU1	
1, 2종 사업장	청정 가, 나, 특례	TU1 TU2	2011. 1. 1부터
3, 4, 5종 사업장	청정 가, 나, 특례	TU2 TU1 TU2	2012. 1. 1부터 2016. 1. 1부터 2012. 1. 1부터

③ 부과금 및 행정처분

- “생태독성”은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 아니며,
-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시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 1단계 낮은 차수의 처분기준을 적용

▶ 시행일 : 2011. 1. 1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4)

■ 경쟁 입찰에 있어서 공정성·합리성 확보 및 소요군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적격심사기준이 개정됩니다.

•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해 감점기준을 마련하고(-0.2~1.0점) 안전관련 인증보유 의무 품목 7종을 선정하여 HACCP 인증 보유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급식분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 능력 심사 시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가점을 새롭게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기준이 변경됩니다.

• 그 외에도, 전시동원업체에 대해 가점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하자 및 지체 반복 업체에 대해 감점 기준이 추가되어 경쟁 입찰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

▶ 추진배경 :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 주요내용

① 급식 안전관리 의무품목 선정 및 HACCP 인증업체 가점 부여(미보유시 1.0점, 보유 시 2.0점)

②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 능력심사 입찰가격 평가기준 변경

(예정가격대비 90%로 입찰시 만점 적용)

③ 수출 유망중소기업(0.1점) 및 전시동원업체 가점(0.2→0.3) 확대 부여

▶ 시행일 : 2010.12월

물품 적격심사기준 및 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개정